

#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

1. 대 상: 재학생(특별전형 입학자 포함), 복학예정자
  - 가.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소득분위 신청을 해야 추후 장학금이 지급됨.
  - 나. 소득분위산정 심사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 
(성적우수장학금, 봉사장학금 등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  
나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자는 장학사정에서 제외됨.)
2. 신청기간: 2018년 5월 25일(금) 9시 ~ 6월 8일(금) 18시까지
  - \* 단, 신청자 중 기혼자(단, 특별전형 입학자는 제외) 추가서류 제출  
- 2018년 7월 23일(월) ~ 7월 25일(수)[10:00~16:00]
3. 가구원 동의: 2018년 5월 25일(금) 9시 ~ 6월 14일(목) 18시까지
  - 단,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요청서(첨부)는 6월 11일(월) 16시까지 법전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유효함
4. 신청절차

기 간	내 용	주 체
5.25.(금) 09:00 ~ 6.8.(금) 18:00	<b>장학금 신청</b>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osaf.go.kr">http://www.kosaf.go.kr</a> ): 로그인> 장학금> 장학금신청> 신청서작성> <b>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</b> > 신청하기 버튼 - <b>소득재산조사방법</b> : <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>, <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(최초신청 포함)> 중 <b>택일</b> . ※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: 1학기 소득인정액 산정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, 이의신청 불가 /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(최초신청 포함) : 2학기 소득인정액 최초산정자 등 선택 가능 - 신청 1~2일 후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필요	신청자
5.25.(금) ~ 6.11.(월) 09:00 ~ 16:00 (주말 및 공휴일, 점심시간 제외)	<b>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신청</b> - 해당자는 양식을 교학팀으로부터 받아서 작성,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에 제출, 교학팀에서는 심사 후 제외심사확인서 교부, 신청자가 교부된 확인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(일반적인 서류제출 경로와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경로 확인필요)	해당 신청자, 교학팀 담당자 (031-219-1667)
5.25.(금) 09:00 ~ 6.14.(목) 18:00	<b>가구원 정보제공동의</b> - 대상 가구원 : 미혼학생-부모, 기혼학생-배우자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osaf.go.kr">http://www.kosaf.go.kr</a> ): 장학금> 소득구간(분위)>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- 가구원 동의는 1회로 그 효력이 지속되므로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한 사람은 이번에 가구	신청자 가구원

	원 동의를 할 필요 없음.	
5.25.(금) 09:00 ~ 6.14.(목)18:00	<b>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</b>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osaf.go.kr">http://www.kosaf.go.kr</a> ): 장학금> 장학금신청> 서류제출현황> 서류제출 클릭	해당 신청자
신고안내문자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	<b>재외국민 국외소득·재산신고</b> - 신고대상 : 가구원(본인 포함) 중 재외국민이 있는 신청자. 신고대상자에게 신청접수완료 2~3일 내에 안내문자 발송 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kosaf.go.kr">http://www.kosaf.go.kr</a> ): 장학금> 소득분위(구간)> 국외소득·재산 신고현황 - 대상자이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대상 제외	해당 신청자
7월 하순	<b>소득분위 산정</b>	한국장학재단
소득분위통보 14일 이내	<b>이의신청</b> (소득분위 확인이 아닌 통보시점 기준)	해당 신청자
8월 중순	<b>확정된 소득분위 산정결과 학교에 통보</b>	한국장학재단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.

※ 장학금 신청 과정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에 문의 바람.

※ 신청 → 가구원 동의 → 서류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재산조사 가능, 기한 이후 별도 재산조사 불가

※ 재외국민 가구원이 있는 학생은 국외 소득·재산 증빙서류 준비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,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은 국내 소득·재산 이외에 국외 소득·재산의 추가 조사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.

## 5. 기혼자 추가 서류제출

가. 제출자격 : 한국장학재단에 2018-2학기 장학금 신청을 한 기혼자

(특별전형 중 가계곤란입학자 제외)

나. 제출기간 : 2018년 7월 23일(월) ~ 7월 25일(수)[10:00~16:00]

다. 제출방법 : 교학팀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

-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봉투에 ‘장학금(기혼자) 신청서 재증’ 이라고 표기해야 함.
- 마감일시까지 서류 미도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.
- 해당기간 미제출시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복지 장학금 수혜 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음

라. 우편 제출처

- (우 1649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308호  
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담당자 (031-219-1667)

마. 제출서류

1) 필수제출서류

가) [별첨5 참조] 법전원 복지장학금 기혼자 추가제출 서식 1부

나) 가족관계 증명서: 본인 기준으로 1부

(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 [efamily.scourt.go.kr](http://efamily.scourt.go.kr) 출력 가능)

다) 주민등록등본: 부,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(민원24 <https://www.gov.kr> 출력 가능)

라) 건강보험증(사본): 부,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

마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1년간): 부,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(국민건강보험공단 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 출력가능)

바) 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부) 증명서(최근 1년간): 부, 모 각 1부

(민원24 <https://www.gov.kr> 출력 가능)

\*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

\* 주민등록등본상 부,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없을 경우 or 재산세 과세 금액의 과세대상이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

사) 소득증빙서류(최근 1년간, 택1) : 부, 모 각 1부

- 근로자: 원천징수 영수증

- 일반 사업자: 소득금액 증명원(국세청 홈택스,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

- 사실증명원(\*소득이 없음을 증명): 소득이 없는자(국세청 홈택스,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

## 2) 선택서류

가) 대출증명서: 대출잔액 증명서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 등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나)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## 3) 제출 시 유의사항

가) 장학서류 제출 시 상기 제출 서류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

나) 특별전형 장학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

다) 관련 서류는 부, 모 각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,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미제출시 장학사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책임임.

**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**